

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 
(제2차 본회의)

2013. 10. 18.(금) 10:00~

# 조례안 심사 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
#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10. 02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10. 02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0. 11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3. 1. 23자로 개정되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,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사항,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 등이 변경·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(1)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삭제함(안 제8조 ~ 제10조)
 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

- (2)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관련 조문 정비함(안 제13조)
  - 변경등록 사례 추가 :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
- (3)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및 「행정절차법」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 규정함(안 제13조의2)
  - 제외요건 강화 :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(51% ⇒ 55%)
  -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 ~ 오전 8시 ⇒ 오전 0시 ~ 오전 10시
  -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
⇒ 매월 이틀  
(원칙은 공휴일, 합의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 가능)
  - 처분 절차 명문화 : 처분의 사전통지 및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 제공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이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되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,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사항,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 등이 변경·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
- 나.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